

|           |                    |      |
|-----------|--------------------|------|
| 의안번호      | 제 호                | 의결사항 |
| 의결<br>연월일 | 2022. . .<br>(제 회) |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령안

|        |                         |
|--------|-------------------------|
| 제출자    | 국무위원 000<br>(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제출 연월일 | 2022. .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정 이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2. 8. 4.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구성, 전략기술의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전략산업등 육성·보호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포함되는 내용과 수립 절차를 규정함(안 제3조~제8조)

나.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통계 작성 범위와 통계 전문기관의 지정 내용을 규정함(안 제10조~제11조)

다.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기술조정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내용 규정함(안 제12조~제18조)

라. 긴급수급안정화조정 절차와 자료 제출을 규정함(안 제19조~제20조)

마. 전략기술을 지정·변경 및 해제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함(안 제21조~제24조)

바. 전략기술의 수출, 전략기술보유자의 해외 인수·합병등에 대한 내용과 절차를 구체화함(안 제25조~제29조)

사. 전략기술의 보호조치와 전문인력등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30조~제32조)

아.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지역, 지정 요건 및 절차, 지정해제 등 주요기준과 특화단지육성시책에 포함되는 내용을 구체화함(안 제33조~제36조)

자.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신속처리 대상 인·허가등 의제, 운영 지원, 입주기관 지원, 민원 신속처리 등 특례 내용을 구체화함(안 제37조~제42조)

차.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중소기업 지원, 기술개발사업 추진, 특별회계등의 종류, 규제개선의 신청·관리·감독, 투자 활성화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43조 ~ 제50조)

카. 전략산업등의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계약학과·특성화대학·종합교육센터등의 설치, 해외 우수인력의 활용 등을 구체화함(안 제51조 ~ 제57조)

타. 전략산업의 연대협력 촉진을 위한 협의회 구성, 연대협력모델의 선정 및 지원 등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58조 ~ 제60조)

파. 권한의 위임·위탁,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특별법의 보칙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안 제61조 ~ 제62조)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2장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 기본계획 등

제3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전략산업등”이라 한다)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 및 긴급대응 체계
2. 전략산업등 관련 원부자재, 소재·부품·장비 등 핵심 품목의 비축·

## 관리 방안

3. 전략산업등 관련 기술육성 목표, 연구개발, 연구성과 확산 및 정보자원의 고도화에 관한 사항
4. 전략산업등의 국내 투자 동향 및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와 개선에 관한 사항
5. 전략산업등 인력양성을 위한 대학 및 대학원의 관련 학과 개설·운영, 정원 관리 등 교육제도에 관한 사항

제4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목표 및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법 제5조제2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사업의 내용 및 추진일정 등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부문계획에 관한 작성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작성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가 있을 경우 제1항의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대한 부문계획을 작성하여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부문계획이 중복되거나 상충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문계획을 수정·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른 특화단지 지정계획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제34조제3항에 따라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출한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경제 안보 확보, 국민경제의 성장 및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중 일부분을 제외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이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면 위원회의 심의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실

행계획을 수정·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실행계획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고시해야 한다. 다만, 국가·경제 안보 확보, 국민경제의 성장 및 전략산업 등의 육성·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행계획 중 일부분을 제외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실행계획의 변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행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항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
2. 그 밖에 전략산업등 육성·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8조(실행계획의 실적보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실행계획 이행실적을 다음 해 2월말까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현황조사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예측(이하 “현황조사등”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략산업등의 생태계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전략산업등의 인력 현황 및 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
3. 전략산업등의 제조기술현황 및 발전전망
4. 전략산업등의 생산경쟁력 및 수급 등에 관한 사항
5.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기업 현황
6. 전략산업등의 시설·장비·예산 현황
7. 전략산업등 관련 지식재산권 현황
8.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략산업등 육성·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현황조사등은 3년마다 실시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 관련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현황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통계 작성 범위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략산업등의 산업 동향 및 시장 현황
2. 전략산업등의 인력·시설·장비 및 기술 개발 현황
3. 전략산업등 관련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현황
4. 국내외 전략산업등의 보호 기술 및 체계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략산업등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

항에 관하여 3년마다 통계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제11조(전략산업등 통계 전문기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전략산업등 통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연구원
3.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서 전략산업등 관련 사업자단체
4.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전략산업등 통계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통계 작성을 담당할 조직이나 인력의 현황자료
2. 통계 작성에 관한 계획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략산업등 통계 전문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전략산업등에 관한 통계자료의 조사·작성·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산업등 통계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금융위원회위원장 및 국가정보원장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을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사전에 간사위원에게 직무의 일부를 위임한 경우에는 간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제목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상정하려는 안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간사위원과 협의·조정을 거친 후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장 및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송부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5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나 공공기관·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협회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

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6조(기술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첨단전략 기술조정위원회(이하 “기술조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전략기술의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사전검토와 조정
2. 전략기술의 육성을 위한 국가연구개발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기술조정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② 기술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 되,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산업통상자원부차관
3. 국가정보원차장
4. 특허청장
5. 방위사업청장
6.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기술조정위원회 위원장 (이하 “기술조정위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차관급 공무원
7. 기술위원회에서 심의하려는 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제1호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위원의 추천을 받아 기술조정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기술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상정되는 안건별로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전략산업등 관련 기업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기술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술조정위원장”으로, “위원회”는 “기술조정위원회”로 본다.

제17조(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3. 그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②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전문위원회 소관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2.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

다. 다만, 위촉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각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각각 두며, 간사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전략산업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⑥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거나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사전에 전문위원회의 위원에게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 등 회의 개최계획을 알려야 한다.

제18조(운영세칙)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기술조정위원회·전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긴급수급안정화조정의 절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이하 “수급안정화조정”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심의를 거쳐 수급안정화조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수급안정화조정의 내용, 기간 및 사유 등을 고시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급안정화조정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생산계획 변경에 필요한 비용

2. 국내우선공급 등 공급계획의 수립·실시 및 변경에 따른 사업자등의 손실 보전

3. 운송·보관·비축·양도에 필요한 비용

4. 수급을 위한 물류·유통구조 정비 및 관련 시설의 개선·확충에 필요한 비용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급안정화조정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한시적 규제 완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자료의 제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급안정화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급안정화조정을 감독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에게 법 제45조에 따른 자료제출 및 검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기한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

④ 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수급안정화조정을 위하여 필요

한 자료·정보를 제공한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⑤ 법 제10조제5항제5호에서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란 같은 조 제1항의 자료 또는 정보가 제공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소송
2.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3. 「특허법」, 「실용신안법」에 따른 특허심판
4. 그 밖에 법령에 근거한 분쟁조정절차에 따른 분쟁조정

### 제3장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 및 관리

제21조(전략기술의 지정) ①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허 보유여부 등 국내 기술수준과 산업화 단계
2. 교역규모 및 국제 산업공급망 구조
3. 그 밖에 전략기술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략기술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나 공공기관·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협회 등에 전략기술에 관한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업 또는 사업자단체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전략기술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지정 요청 기술의 범위와 내용
2. 지정 요청의 사유
3.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기준과 관련한 자료
4. 해당 지정 요청 기술 관련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의 의견
5. 그 밖에 해당 기술의 지정 요청과 관련한 참고자료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략기술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결과 등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유출 등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예상되어 긴급히 전략기술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산업기술 유출 방지업무를 수행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기술의 지정을 위원회에 즉시 상정할 수 있다.

제22조(전략기술 여부 판정 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략기술 여부 판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기술의 특성·용도 및 성능에 관한 자료
2. 해당 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략기술의 산업적 중요성, 파급 효과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기술이 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판정을 신청한 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심사에 걸리는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자료 제출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3조(전략기술의 변경 또는 해제)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략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전략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이나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해당 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이하 이 조에서 “전략기술보유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전략기술을 변경하

거나 해제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2. 전략기술의 유출, 기술 환경의 변화, 동일하거나 진보된 기술의 개발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전략기술을 변경하거나 해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전략기술의 변경 또는 해제를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전략기술의 범위와 내용
2. 변경 또는 해제 요청의 이유
3. 전략기술보유기관의 의견
4. 그 밖에 전략기술의 변경 또는 해제 요청에 관한 참고자료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략기술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전략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략기술을 지정해제할 수 있다.

제24조(그 밖의 전략기술 지정·변경 및 해제 절차) 제21조부터 제23조  
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기술 지정, 변경 및 해제의 세부절  
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전략기술의 수출승인 신청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략  
기술의 수출을 승인받으려는 전략기술보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  
로 정하는 전략기술 수출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략기술의 매각 또는 이전 계약서(임시계약서를 포함한다)
2. 전략기술의 매입자 또는 이전받으려는 자에 관한 사항
3. 전략기술의 용도와 성능을 표시하는 기술자료
4. 전략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
5. 전략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
6.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접수일부터 45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산업기술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승인을 신청한 전략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걸리는 일수(日數)는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승인할 때에는 승인의 유효기한 설정, 수출실적의 제출, 입증서류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6조(해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해외인수·합병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전략기술보유자의 주식 또는 지분(장래에 주식 또는 지분으로 전환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할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100분의 50 이상 소유하려는 경우(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려는 경우로서 주식등의 최대소유자가 되면서 전략기술보유자의 임원 선임이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외국인의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나.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주요 주주나 주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다.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주요 주주나 주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자를 임명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회사

2. 외국인이 전략기술보유자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방식으로 그营业을 경영하려는 경우

3. 외국인이 전략기술보유자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출연을 하면서 과반수 이상의 임원 선임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

②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는 개인
2.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본사를 둔 법인
3.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4. 국제부흥개발은행·국제금융공사·아시아개발은행 등 개발금융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국제기구
5. 대외투자업무를 취급하거나 대행하는 국제기구

제27조(해외인수·합병등의 승인 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외인수·합병등을 승인받으려는 전략기술보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략기술 해외인수·합병등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외인수·합병등과 관련된 계약서 또는 계획서
2. 해외인수·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의 명칭, 주요 주주 현황, 매출액, 자산총액 및 사업내용에 관한 자료
3. 해당 해외인수·합병등의 내용 및 관련 시장 현황에 관한 자료
4. 전략기술의 용도와 성능에 관한 기술자료
5. 전략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에 관한 자료
6. 전략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에 관한 자료
7.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서 접수일부터 45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승인 대상 전략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한 경우 이에 걸리는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28조(해외인수·합병등 진행사실의 신고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외인수·합병등의 진행사실을 신고하려는 전략기술보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략기술 해외인수·합병등 신고서에 제27조제1항 각 호의 서류(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서류는 전략기술보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해당 해외인수·합병등에 대하여 승인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접수일부터 45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고인 및 해당 해외인수·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승인 대상 전략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한 경우 이에 걸리는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 과정에서 해외인수·합

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29조(해외인수·합병등의 사전검토) ①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승인 또는 신고 대상 해외인수·합병등이 국가·경제 안보와 관련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략기술 해외인수·합병등 사전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인수·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의 명칭, 주요 주주현황, 매출액, 자산총액 및 사업내용에 관한 자료
2. 해외인수·합병등의 내용 및 관련 시장 현황에 관한 자료
3. 전략기술의 용도와 성능에 관한 기술자료
4. 전략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에 관한 자료
5. 전략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 및 경쟁력 수준에 관한 자료
6. 그 밖에 해외인수·합병등의 사전검토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해외인수·합병등의 사전검토에 대한 통보 등에 관하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0조(전략기술의 보호조치 등) ①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략기술에 대한 보호 등급의 부여와 보안관리규정의 제정
2. 전략기술 관리책임자 및 보안 전담인력의 지정
3. 전략기술 보호구역의 통신시설과 통신수단에 대한 보안
4. 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처리 과정과 결과에 관한 자료의 보호
5. 전략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구분 및 관리
6. 전략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7. 전략기술의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체제 구축

② 법 제14조제4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직 및 창업 관련 정보의 제공
2. 계약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
3. 전략기술의 개발·육성, 보호조치를 위한 연장근로 계획

③ 법 제14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전문인력이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계약 중 해외 동종 업종으로의 이직 제한 및 전략기술 관련 비밀유출 방지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해당 전문인력이 법 제15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해당 전문인력이 해외 취업을 하였거나 할 것으로 파악되는 상황에서 2주 이상의 기간을 주고 소명을 요구하였음에도 제대로 된 소명을 하지 못한 경우

4. 산업기술 유출방지업무를 수행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해당 전문인력의 전략기술 해외 유출 가능성이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전략기술보유자에게 출입국 정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이 경우, 전략기술보유자는 해당 전문인력의 출입국 정보를 정보수사기관의 장과 공유할 수 있다)

④ 법 제14조제5항의 출입국 정보 제공을 신청하려는 전략기술보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략기술 전문인력 출입국 정보 제공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전문인력등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전략기술을 취급하는 보직과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등”이라 한다)등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등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등의 지정 사유 및 기간
2. 전략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전문인력등의 관리 방안
3. 보직 담당자 및 전문인력의 인적 사항
4.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 및 관련법령에 따른 연장근로 필요성 및 계획

5. 그 밖에 전문인력등의 지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등과 체결하는 계약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한 후 고시하는 표준계약서에 의한다.

제32조(산업기술 포함 정보를 제공받는 적법한 경로) 법 제15조제8호에서 “전략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란 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것으로서 제20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송 등을 말한다.

#### 제4장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특례 등

제33조(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지역)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자본금과 생산능력 및 기술수준을 갖춘 하나 이상의 기업이 위치하여 있거나, 구체적인 이전 또는 투자 계획이 수립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 중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지역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제34조(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략산업등의 집적 또는 경쟁력 강화 효과가 있을 것
2. 특화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3. 특화단지가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과 전략산업등의 연계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
4.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할 것
5.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도시개발 및 산업발전과의 유기적 연관성 제고를 통한 지속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략산업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요건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전략산업등 관련 기업 또는 사업자단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특화단지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
  2. 해당 지역의 전략산업등의 현황 및 기반시설 현황
  3. 전략산업등의 혁신생태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특화단지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5. 전략산업등의 집적, 투자, 인력양성 및 연구기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6. 전략산업등의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자원 확보 방안
  7. 특화단지 조성·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요청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특화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역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육성계획을 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육성계획은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육성계획으로 본다.
- ⑤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지정받으려는 특화단지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업자, 기관 등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단지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특화단지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지정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도지사가 법 제17조 제4호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특화단지의 명칭·위치 및 지정 해제 요청 사유
2.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및 관리 방안
3. 그 밖에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을 공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지정 해제되는 특화단지의 명칭·위치

2. 해당 특화단지의 지정일 및 해제일

3.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사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36조(특화단지육성시책) 법 제18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화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특화단지에 필요한 전략산업등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특화단지육성시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할 시·도의 특화단지 지원계획

제37조(신속처리 대상 인·허가등 의제 등) ①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특화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허가등이 신속처리되는 사항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 또는 승인
2. 「경관법」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지구지정,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물의 건축 관련 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
3.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5.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허가 등의 신속처리를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속처리신청서에 해당 인·허가 등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허가등의 처리 계획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인·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기간 내에 처리 계획을 보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통지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처리 결과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제38조(특화단지 운영 지원) ①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

2. 전기공급시설(「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3. 용수공급시설(「수도법」 제3조제17호의 수도시설을 말한다)

4. 폐수처리시설(「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내지 제13호 및 제1

7호를 말한다)

5. 가스공급시설(「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의 시설을 말한다)

6.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의 시설을 말한다)

7. 통신시설

8. 특화단지의 공동구(共同溝)

9. 집단에너지공급시설

10. 전략기술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창업·사업화 지원 등을 위한 연구·진흥시설

11. 전략기술에 대한 검증, 인증 및 실증화 시설

12. 공동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 및 설비

13. 그 밖에 특화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공공시설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

②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의 특화단지 운영, 입주기관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한 부지의 조성,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

2. 종업원에 대한 주거지원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3. 용수공급사업, 산업재해예방사업 및 환경오염방지사업

4. 인력양성·활용 및 재직자 교육·연수사업

5. 특화단지 입주기업의 기술개발, 연대협력 등 생산성향상 및 수출  
촉진에 관한 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이  
「산업융합 촉진법」 제8조에 따른 심의를 받을 경우 우선하여 심의  
할 수 있다.

제39조(산업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는 산업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  
가·허가·승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시행의 허가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  
가
3.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  
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  
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의 허가
7.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

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9.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0.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11.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제40조(산업기반시설의 관리 지원) ① 국가는 법 제20조에 따라 특화단지에 설치된 산업기반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유지·관리하는 산업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교통안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된 산업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

②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국가의 지원 규모,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41조(특화단지 입주기업 지원)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임대료는 해당 국유재산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의 대상사업 및 감면을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 창출, 특화단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 또는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임대기간의 갱신 또는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 등의 신청을 해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하여 기술개발,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화단지 안에 설치된 각종 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2조(민원의 신속처리 특례) 법 제2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2.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에 따른 도급의 승인
3.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연장근로 신청의 인가
4.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에 따라 신청한 전략기술 관련 제품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처리
5.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에 따라 신청한 전략기술 관련 제품에 대한 임시허가의 처리

6.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
7.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통합허가  
사전협의 및 동법 제6조에 따른 통합허가
8.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취급시설의 설치 검사 심사 및  
승인
9.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허가
10.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축허  
가등의 동의
11.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성능위  
주설계의 신고수리
12.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건축허가신청서의 처리
13.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제출한 사용승인신청서의 검사 및 결  
과 통보
14.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결과 통보
15.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결  
과 통보
16.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0조에 따라 제출한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및 검토
17.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라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의 검

## 토 및 결과 통보

1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제출한 지하안전  
평가서의 검토 및 결과 통보
19.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 심의 및 제13조에 따른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제출한 개  
발행위허가 신청서의 처리
2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제출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결과 통보
2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제조소등의 기준  
특례 적용 심사를 위해 신청한 안전성 평가 심의 및 결과 통보
23.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제출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  
가 신청의 처리
2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제출한 중간  
검사 신청과 완성검사 신청의 처리

## 제5장 전략산업등의 혁신발전 지원 및 기반조성

제43조(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법 제24조제8호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1.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각종 소송수행과정에서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지원

2. 전략산업등의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의 확산을 위한 시책의 추진
3. 전략산업등 관련 산·학·연 협력
4. 특화단지 입주 지원
5. 전략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6. 법 제32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투자 활성화 지원
7. 법 제42조에 따른 연대협력모델의 발굴 지원

제44조(국가첨단전략기술개발사업의 추진) ① 법 제2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기술개발 분야 시장동향 및 시장 경쟁력 분석
2. 기술개발의 사업화 타당성 조사
3. 기술개발을 위한 경영 및 기술 지도
4. 기술개발을 위한 민간투자유치의 지원 및 연계
5. 기술 거래와 이전을 위한 정보의 조사 및 분석
6. 국외 기술의 도입을 위한 중개·알선
7.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등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1. 기술개발사업의 과제
2. 기술개발사업의 책임자
3.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출연금의 금액
4. 기술개발사업 성과의 활용 및 기술료의 납부에 관한 사항
5. 기술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정산에 관한 사항

제45조(기술개발사업 실시 기관 등) 법 제25조제3항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하 “산업기술연구조합”이라 한다)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대학부설연구소
5.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6.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7.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8.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9.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하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라 한다)
10.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인증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
11.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2.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개발사업 실시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기업

제46조(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출연금을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은 기술개발사업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47조(전략산업등 지원 특별회계등) 법 제28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회계 및 기금”이란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

및 기금을 말한다.

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2.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2에 따른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 촉진기금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5.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
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8.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2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
9. 「무역보험법」 제30조에 따른 무역보험기금
10.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2.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략산업등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금

제48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결과를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사전에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29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규제개선”이라 한다)의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규제개선 신청내용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2. 규제개선을 통한 목적 달성 가능성
3. 해당 규제개선의 결과로 인한 파급효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해당 규제개선의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관련 법령의 정비에 착수하거나 관련 법령의 정비를 완료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특례를 부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49조(규제개선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의 사업 이행 현황, 규제개선 심의·결정 사항의 준수 여부 및 사고 발생 여부 등을 관리·감독하게 해야 한다.

② 규제개선을 부여받아 시행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

함하는 규제개선 적용 및 사업 결과를 규제개선 부여 후 3개월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1. 사업의 이행 현황

2. 규제개선 부여 시 붙인 조건의 이행 여부(조건을 붙인 경우만 해당한다)

3. 해당 사업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4. 추가적인 법령정비 및 규제개선 필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규제개선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제출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요청에 의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

힌 문서로 해야 한다.

1. 법 제30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중 해당 사유
2. 시정명령 내용
3. 시정기간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절차

⑥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규제개선의 적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제50조(투자 활성화 지원) ① 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협의하는 경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벤처투자는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동법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전략산업등의 투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한국벤처투자는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1개월 전까지 투자 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회계연도마다 관련 예산, 결산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략산업등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한 투자역량을 갖춘 투자자의 발굴 및 육성
2. 투자자 간의 정보 교류 지원
3. 투자자와 전략산업의 교류 지원

4. 그 밖에 전략산업등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장 전략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제51조(전문인력 양성사업)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양성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퇴직근로자 등 전략산업등 분야 숙련 인력이 보유한 기술·지식의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술계승에 관한 사업
2. 전문기술인력의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국내외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조사·분석·평가·거래 등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2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운영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계약학과등을 운영하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다목에 따른 대학에 계약학과등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3조(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

산업 특성화대학 또는 특성화대학원(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 지정신청서에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략산업등 전문인력 양성 비용의 지원
2. 전략산업등 연구에 필요한 비용 지원
3. 전략산업등 관련 학생 정원 조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한다.

제54조(교육훈련기관의 설립) ①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한 전략산업등의 교육훈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말한다.

1. 300m<sup>2</sup> 이상의 교육시설을 갖출 것
2. 100m<sup>2</sup>당 1명의 전담직원을 보유할 것

3. 1년에 180일 이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4. 전략산업등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실습 장비를 갖추 것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제3호의 교육기관을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로 지정하거나, 운영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해당 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5조(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상공회의소법」 제34조에 따라 설립한 대한상공회의소

2. 「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한국생산성본부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국공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마.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서 전략산업분야 사업자단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담 인력을 4명 이상 보유할 것

가.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법인이나 단체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에 관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로서 전략산업 관련 컨설팅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정취지서

2. 정관

3. 해당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지정받으려는 자의 성명, 주소 및 약력(기관대표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정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을 기재한 서류

4.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5. 재산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전략산업종합교육

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략산업  
종합교육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  
다)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센터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2. 센터 사업의 범위와 내용

⑥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마다 12월 31일까지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사업 수행 내용

2. 보조받은 비용의 사용 내용(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비용을 보조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⑦ 센터에 대한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  
로, “기술개발사업”은 “전문인력양성사업”으로, “기술개발사업자”는  
“센터의 장”으로 본다.

제56조(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을 센터가 수행하는 전문인력양성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은 센터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센터의 전략산업 인력양성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센터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57조(해외 우수인력 정보의 활용)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외 대학·연구기관·기업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1. 해외 우수인력 발굴·유치 사업
2. 국내 우수인력 육성을 위한 국제교류 사업
3. 그 밖에 전략기술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장 산업생태계 연대협력 촉진

제58조(연대협력협의회) ① 법 제4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략산업등의 경쟁력 강화에 관하여 산업계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연대협력사항의 조정
2.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포함할 연대협력 대상사업 및 방법
3. 연대협력 확산

#### 4. 연대협력 관련 분쟁조정

- ②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연대협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⑤ 협의회는 전략산업등의 경쟁력 강화 관련 연대협력방안에 관한 중요 협의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협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59조(연대협력모델 선정절차) ① 위원회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계획서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협의회 심의와 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지원 대상 연대협력모델의 선정 여부, 지원의 범위 및 조건 등을 확정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대협력모델의 발굴, 선

정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0조(연대협력모델의 지원 및 우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된 연대협력모델에 대하여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거나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우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회신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회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결과를 존중하여 지원 또는 우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회신을 받은 경우에는 연대협력모델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 제8장 보칙 등

제6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에 따른 특화단지육성시책의 수립을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신청에 관한 접수 업무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또는 전략산업등 관련 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신청이 접수되면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1.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전략기술 여부 판정 신청의 접수
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규제개선 신청의 접수
3.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기업의 전략기술 지정 요청의 접수
4.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업의 특화단지 지정 신청의 접수
5.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신속처리신청서의 접수

제6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 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령 제62조 관련)

###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을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법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출입·검사 등을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 법 제51조 제1항 | 250만원          | 500만원 | 1천만원     |